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7
----------	------

발의연월일 : 2016. 11. 10.

발의자 : 윤관석 · 권미혁 · 김해영

강병원 · 서영교 · 김상희

도종환 · 박완주 · 전혜숙

박광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미성년자·<u>금치산자</u> 또는 한정치산자</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u>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